

ADR을 통한 인도기업과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ys of Disputes Resolution Against Indian Company through ADR system

신군재(Koon-Jae, Shin)

신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IV. 결론
II. ADR의 유형	참고문헌
III. 인도의 분쟁해결제도	Abstract

국문초록

2000년 이후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간 분쟁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주요 ADR제도이고, 둘째, 인도는 중재·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각 분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 제도를 숙지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주제어 :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중재, 조정, 협상, Lok Adal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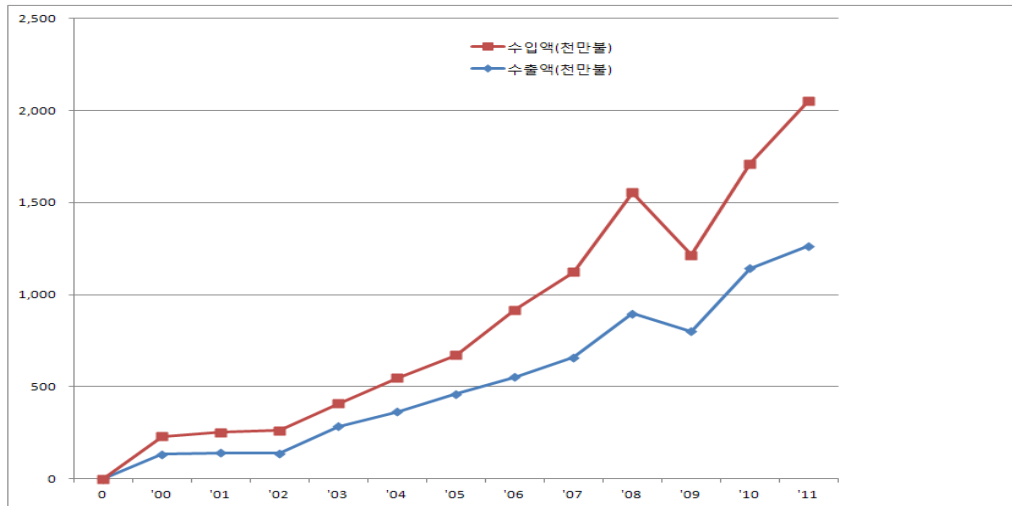
I. 서론

우리나라 무역액이 2011년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강국과 신생 경제대국인 중국에 이어 세계 7위의 기적을 달성한 것이다¹⁾. 이러한 수출대국이란 영광의 이면에는 품목²⁾, 지역³⁾, 산업⁴⁾ 및 일부 기업들⁵⁾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또 다른 목표인 무역규모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와의 교역 증진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한-인도 교역규모는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인도 수출액은 2000년 13억 6천만 달러에서 2011년 126억5천만 달러로 약 9.3배, 수입액은 2000년 9억 8천만 달러에서 2011년 78억9천만 달러로 약 8배, 무역수지 흑자는 2000년 3억 8천만 달러에서 2011년 47억6천만 달러로 약 12.5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역증가는 인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의 교역국가 다변화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시작되어 12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10년1월에 발효된 한국-인도간 CEPA 체결은 한국과 인도와의 교역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인도간 교역의 증가는 곧 분쟁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⁶⁾. 이러한 양국간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칭함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 내에서는 인도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ADR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인도의 분쟁해결제도로써 소송제도와 ADR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향후 한국 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ADR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 1) 박승록, “무역 1조 클럽 가입의 기적, 그 이면의 해석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1.12.9., p.1.
- 2) 2010년에도 조선, 반도체,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등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50%를 넘는다.
- 3) 2010년 기준 중국에 25.1%, 미국에 10.7%, 일본에 6.0% 등 5개 나라에 50%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의 30%가 넘는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4) 우리의 제조업에서 정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액정표시장치 등 일부 산업의 비중이 크다.
- 5)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에서 99.9%, 종사자수에서 87.7%를 차지하나 수출에서는 금년도 약 43%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의 36.9%에 비해서는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반면 상위 대기업의 수출은 대단한 약진을 보이고 있다. 대표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약 80%,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60%, 현대중공업은 90%, 엘지디스플레이는 95%, 삼성중공업은 92%, 대우조선해양은 98%, 하이닉스는 97%를 수출하고 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대기업 가운데에서도 거대기업들이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 6) 예로서, 대한상사중재원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12년 9월까지 중재는 총 18건, 알선 174건이었음.
- 7) 국내에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 소송외분쟁해결제도, 간이하고 새로운 민사분쟁해결제도, 재판외분쟁처리절차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 통일하였음.

자 한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통계자료, 2000 - 2011.

〈그림 1-1〉 대인도 교역현황

(금액:천만불)

II. ADR의 유형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1970년대 전통적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사용되게 되었다. ADR은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분쟁 해결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법원에서 소송 중에도 이용되고 있어, 전통적인 법원 중심적 법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ADR를 보기도 한다⁸⁾. 문명사회에서 법치에 따른 자연적 정의의 원칙은 분쟁사건에 있어서 완전한 정의를 초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법치는 분쟁사건에서 승-패 상황을 초래하는 권위적 개념이다. 반면에 ADR은 승-승 상황의 유리한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하여 법치에 일치한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사용한다⁹⁾. 또한, ADR은 행정부에서도 기존의 행정행위를 대체 또는 보완

8) William Twining, *Alternative to What; Theories of Litigation, Procedure and Dispute Settlement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Some Neglected Classics*, 56 Mod. L. Rev. 380, 1993, p.383.

9) Nishita Medha,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India*, Nalsar University of Law, p.26. (http://www.fdrindia.org/publications/AlternativeDisputeResolution_PR.pdf; 10. July, 2012)

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갈등관리차원에서 분쟁예방 및 해결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ADR의 개념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구속력 여부, 및 제3자의 개입여부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어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곤란하다¹⁰⁾. Coulson은 ADR을 “사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강제적이라기 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제도이다”라고 하였다¹¹⁾. Lieberman & Henry는 ADR을 “①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② 기존의 소송에 의해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 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③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하였다¹²⁾. 기존의 ADR에 관련한 정의들을 종합하면, ADR은 전통적인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으로서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쌍방 모두 승리하는 승-승 결과(win-win outcome)에 그 목표를 두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ADR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小島武司伊藤眞(1998)는 절차구조, 분쟁해결기관의 성격, 대상이 되는 사건 및 해결안의 구속력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¹³⁾. 즉, 절차구조에 따라 절차개시시점에서 당해 절차에 의한 해결을 중용하는 중재형과 해결안 내용이 형성된 시점에서 합의를 중용하는 조정형으로 구분하고, 분쟁해결기관의 성격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부된 것, 행정위원회에 행하여진 것, 민간의 사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결안의 구속력여부에 따라 화해, 조정 및 중재로 구분하였다. Goldberg, Sander & Rogers(1992)는 기본적 분쟁해결방법(primary dispute resolution)과 절충적 분쟁해결방법(hybrid dispute resolution)으로 나누었다¹⁴⁾. 기본적 분쟁해결방법은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분쟁해결 형태는 협상이며, 절차상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되 결과는 당사자가 통제하는 방법을 조정, 그리고 절차와 결과를 모두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을 중재라고 하였다. 절충적 분쟁해결은 소송유사적인 증거제시 및 변론절차가 협상과 결합된 형태로 간이심리(mini-trial)¹⁵⁾, 조정과 중재가 결합된 형태인 조정-중재(med-arb)¹⁶⁾, 조정에 사실조사기능이 결합된 음부즈만

10) Janet Reno 전 미국법무부장관은 'alternative'라는 용어 대신 'appropriat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Janet Reno, Address to the Society of Professionals in Dispute Resolution in Dispute Resolution and Lawyer, 2d ed., 1997, p.76.

11) Robert Coulson,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p.6.

12) Jethro K. Lieberman & James F.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Spring 1986, pp. 425-426.

13) 小島武司·伊藤眞, 「裁判外紛争處理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有斐閣, 1998, p.10.

14) Stephen B. Goldberg, Frank E. A. Sander and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es*, Little Brown & Co., 1992, p.3.

15) 간이심리(Mini-Trial)란 B2B분쟁 시 판결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감정이 악화되었을 경우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제3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화해의 성격을 갖는 분쟁해결제도이다.

16) 조정·중재(Med.-Arb.)는 제3자가 조정인을 역할을 하거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인의 역할까지 하여 판정을 내리

(ombudsman)¹⁷⁾, 그리고 법원 ADR(court-annexed ADR)¹⁸⁾, 중재와 소송이 결합된 형태로서의 사적판결(Private Judging : Rent-a-Judge)¹⁹⁾ 등으로 구분하였다.

Ⅲ. 인도의 분쟁해결제도

1.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1) 3심제

인도는 약 601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9개의 주를 가진 외견상 연방체제이지만, 사법제도는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도의 사법제도는 대법원(최고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구분된 3심제이다. 각 지방행정구역에는 지방법원이 있고, 봄페이와 구와화티과 같은 몇몇 도시를 제외한 각 주에는 21개의 고등법원이 있으며, 그리고, 최종 법원으로서 대법원(최고법원)이 있다²⁰⁾. 인도의 대법원은 뉴델리에 위치하고 있고, 약 29명의 판사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bench comprising of judges)에 의하여 결정된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중요 고비 때 마다 정치적인 독립과 권위를 가지고 국가이익과 사회통합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려, 신생국가 인도의 초석마련과 헌법정신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다. 고등법원은 항소심이면서 모든 법원 및 재판부의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률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Sikkim과 같은 작은 주에 있는 고등법원은 판사가 2명밖에 없는 반면에 몇몇 큰 주에는 약 29명의 판사가 있다²¹⁾. 또한, 고등법원은 도시 또는 시골에 위치하였는지에 여부 그리고, 그러한 법원이 판결할 자격이 주어지는 분쟁의 가치에 따라 그 산하에 민사 및 형사법원이 분류되어 있다²²⁾.

는 분쟁해결방법이다.

- 17)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특정 조직내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고충사항 또는 행정청에 대한 민원을 제3자가 이를 대변해주고 옹호해주는 제도로서 북유럽에서 이용하여 온 제도이다.
- 18) 법원ADR(Court Annexed ADR)이란 법원이 개입되어 행하는 ADR로서 법원중재(court-annexed arbitration), 법원조정(court-annexed mediation), 약식배심심리(summary jury trial) 등이 있다. 우리나라 민사조정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 19) 사적판결(Private Judging : Rent-a-Judge)은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제도이다.
- 20) Kachwaha & Pamers, "The Indian Judicial System: An Introduction", (www.kaplegal.com/articles/indian-judicial-system.html; 20 Nov.2011).
- 21) Sumeet Kachqaha and Dharmendra Rautray, "Dependability, diversity and delay", IFLR Litigation & Dispute Resolution p.3.(www.iflr.com; 23 April 2012).

2) 영국법의 영향

인도의 법제는 영국법의 계승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독자적인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인도의 법제 개혁 노력은 1947년 8월15일 독립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인도정부는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사법절차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²³⁾.

영국법의 영향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소송절차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대부분 상사 및 기업 법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절차법 또한 영어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도는 일반법(common law)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이전 판결이 국법과 똑같은 강제력을 가질 정도²⁴⁾로 판례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주요 특징

인도의 사법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다는 명성을 갖고 있다. 판사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되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부여된 관할재판권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법률을 폐기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또한 주 정부의 행위가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독단적이라는 이유로 주 정부의 행위에 개입할 수도 있다²⁵⁾.

인도법원의 관할권은 첫째, 분쟁을 발생시킨 행위의 원인이 법원의 지역적 관할권에서 발생한 경우, 둘째, 피고가 법원의 지역적 관할권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셋째, 소송의 대상이 움직일 수 없는 것 즉 부동산이나 영원히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부착된 사물이고, 이러한 사물이 법원의 지역적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에 주어진다²⁶⁾.

한편, 인도정부는 지적재산권상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 (IPAB)], 소득세항소재판부,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ITAT), 채무회복재판부[Debt Recovery Tribunal(DRT)], 중앙행정재판부[Central Administrative Tribunal(CAT)]⁸⁵⁾, 산업 및 재정 재건을 위한 위원회[Board for Industrial and Financial Reconstruction (BIFR)] 및 중앙간접소비세 항소재판소[Central Excise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CESTAT)] 등과 같은 특별한 성격의 문제를 다루는 특별재판소를 가지고 있다²⁷⁾.

22) Nishith Desai Associates, Doing Business in India, 2010 Edition, p.35,(www.nishithdesai.com; 1st Feb, 2012).

23) 박찬호, “인도의 사법제도와 소송의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pp.95-96.

24) Vaish Associates, Advocates, REPORT ON Strategies for Doing Business in India, The Commercial Section of the Royal Norwegian Embassy, 2010, p.70.

25) Sumeet Kachqaha and Dharmendra Rautray, op. cit., p.3.

26) Nishith Desai Associates, op. cit., p.35.

4) 소송제도의 문제점

인도의 분쟁해결제도는 크게 사법적 분쟁해결 절차와 ADR절차로 구분한다. 인도에서는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는 소송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시정되어야 할 주요 사항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지연은 당사자에게 불편함과 높은 법적 비용을 야기시키며, 소송 제기자가 그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등 타락의 온상이 되고 있다²⁸⁾. 즉, 판사들의 부조리 불법행위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어 판사의 재산공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계류 중인 소송건수가 갈수록 산적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 계파싸움으로 공식적인 판사가 많고, 판사들의 휴가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변호사들과 판사들 간의 유착문제도 유전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판사들의 판결비리가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⁹⁾.

〈표 III-1〉 쟁점부문별 사법부의 공식의견과 실제사정

쟁점	사법부 의견	실제 사정
판사충원 지연	공석을 메꿀만한 능력있는 인재를 구하기 어려움	정치적인 개입, 판사들간 파벌 대립과 분열
판사재산 공개	사법부를 음해하는데 악용	일부 판·검사들의 은닉재산이 많음
재판의 잦은 휴회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너무 많아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판사들의 피로증후군 일상화	사법부 일부와 변호사들간 유착
판결지연	산적한 소송건수, 직원 및 인프라 부족	휴가기간이 너무 길고 변호사들의 파업으로 법원휴무가 많음
행정부와 따로 국밥	행정부와 사법부간 컨센서스 부족	사법부는 정치화된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지시와 간섭을 받기를 꺼림

자료 : KOTRA, “인도내 비즈니스분쟁, 소송해결 기대어렵다”, Mumbai무역관 자체보고서, 2009.08.31(<http://www.globalwindow.org>) 주간 Indian Today, 2009.9.7, 세계은행 “Doing Business India 2009”, 인도대법원, 인포시스 CEO 기고문, Mumbai KBC 자체 조사 종합에서 재인용.

인도의 사법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앞에서 열거한 판사들의 비리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과거의 관행과 타성으로 사회발전 속도를 따라가

27) Vaish Associates, Advocates, op. cit., p.69.

28) Michael T. Burr, “Litigation & Arbitration”, INSIDECOUNSEL, November, 2007, p.52.(www.insidecounsel.com; 10 June, 2012).

29) KOTRA, “인도내 비즈니스분쟁, 소송해결 기대어렵다”, Mumbai무역관 자체보고서, 2009.08.31(<http://www.globalwindow.org>) 자료원 “주간 Indian Today 2009.9.7”, 세계은행 “Doing Business India 2009”, 인도대법원, 인포시스 CEO 기고문, Mumbai KBC 자체 조사 종합에서 재인용.

지 못하고 있어,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따라서 인도에서의 소송제도는 사법구제수단으로서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고, 사법부가 더 이상 성역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건수는 1999년 11월 20,307건에서 2006년에는 거의 배가되는 39,780건, 2009년 6월에는 50,659건으로 크게 증가세에 있고, 하급법원으로 갈수록 계류 중인 소송건수는 더욱 심각하다.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5월에는 55,797 사건이 대법원에, 3백만 이상의 사건이 21 고등법원에 그리고, 2,630만 이상의 민사 및 형사 사건이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였다³⁰⁾.

〈표 III-2〉 법원별 계류중인 소송건수와 공석중인 판사수(2009.3월말 현재)

계류건수(2009.3월말 기준)		공석중인 판사수	
		정원	결원
대법원	50,163	31	7
고등법원	3,955,224	886	234
지방법원 및 지원	26,752,193	16,721	2,988

자료 : 상계자료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법원은 첫째, 법원과 법관의 수가 전체 영토 및 인구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둘째,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다양한 법 때문에 사건이 홍수처럼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높은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부차적인 비용 등으로 소송비용이 높으며, 넷째, 모든 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 누적되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³¹⁾.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은 인도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인도에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ADR의 각 방법 중 하나 또는 둘이상의 결합된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ADR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각 ADR 방법들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0) Vaish Associates, Advocates, op. cit., p.68.

31) Anurag K. Agarwal, "Rol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Development of Society: 'Lok Adalat' in India", Working Paper 2005-11-01,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Ahmedabad-380015 India, November 2005, p.4.

2. ADR에 의한 분쟁해결

1) ADR 활성화 배경

(1) ADR관련법의 제정

인도에서는 법관의 수에 비하여 인구와 분쟁사건이 상당히 많아 법원에 의한 해결이 지연되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많이 이용되어 왔고, 그 이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에서는 일반 민사사건, 특히 당사자간 계약, 보험, 특허분쟁 등과 같은 상사사건에 널리 ADR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³²⁾. 인도에서의 ADR은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기 수세기 전부터 Panchayat 시스템³³⁾이라고 하는 중재·조정제도가 유지·발전해왔으며, 1930년대부터 공식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 ADR 방법들은 상업 및 비상업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분쟁해결을 위하여 폭넓게 사용되어 왔고, 특히 법적인 분쟁해결 기법들에 대한 지식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Lok Adalat라는 방법과 협상에 의한 해결방법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인도의 민사소송관련 절차법을 수정하여 왔으며, 사람들이 신속한 방법으로 정의를 획득하고, 사회에서 분쟁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 왔다³⁴⁾.

① 중재·조정법(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제정

인도에서는 끝없이 시간 소비적이고, 복잡하며 비용이 드는 소송절차는 법학자들로 하여금 분쟁해결을 위해 보다 덜 공식적이지만, 더욱 효과적이며 신속한 대안적 재판소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ADR 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공론화의 결과로 중재법이 제정되었다. 인도의 ADR법은 1937년 조약과 협정에 관한 중재법[Arbitration (Protocol and Convention) Act of 1937], 1940년 중재법(Arbitration Act of 1940), 그리고 1961년 외국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법률[Foreign Award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ct of 1961]로 나누어져 있었다³⁵⁾. 1940년 중재법은 법원의 개입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소송자에게 중재절차에 대하여 불신을 갖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이 지연되도록 함으로써 중재절차가 비

32)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인도편』, 해외지적재산권보호센터, 2008.10, p.198.

33) 이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과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일어난 분쟁을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가 해결하는 전통적 관습이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분쟁해결절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간에 일어난 분쟁에 빈번하게 적용되었다. Anil Xavier, Symposium: Mediation: Its Origin and Growth in India, Journal of Public Law & Policy, Vol. 27, 2005, p.275.

34) Anurag K. Agarwal, op. cit., p.2.

35) 박찬호, 전계논문, pp.97-98.

효율적이고 덜 매력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되도록 하였다³⁶⁾.

인도는 위와같은 불합리한 1940년 중재법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1996년 통합된 “중재·조정법(1996)”을 제정하였다. 첫째, 1991년 인도정부는 자유경제정책을 발표한 이후, 국제거래와 관련된 상거래 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도입되지 않는 한 경제개혁은 불안전하며, 기존의 중재법(1940)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분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었다³⁷⁾. 이러한 인식확산으로 1993년 인도의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합의할 도출하였다. 즉, 법원이 정의를 실행하는데 모든 부담을 질 수가 없으므로, 특정 분쟁들은 중재, 화해, 조정과 같은 대안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인도에서 중재와 조정이 성공하기 위하여 3가지 욕구가 있었는데, 첫째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중재 및 조정의 욕구에 부합될 수 있는 UNCITRAL guideline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정하고, 독립적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능력있고, 정직한 중재인을 확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중재와 조정을 조직화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 및 현대적인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도의회는 1996년 중재·조정법을 제정하였다³⁸⁾.

1996년 중재·조정법(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제정의 주요 목적들은 국내중재와 관련된 법과 국제상사중재 및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통합하고, 화해 및 조정과 관련된 법을 함께 규정하는데 있었다. 또한, 중재인에게 중재판정에 이르게 된 근거를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절차를 규정하고자 하였다³⁹⁾. 이 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에 의해 분쟁해결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국적의 사람이라도 중재인으로서 지명될 수 있다. 중재인으로서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상황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⁴⁰⁾. 인도중재제도를 매력적으로 만든 중요한 조항은 민사소송법 조항에 의거하여 중재판정이 법원의 판결과 같은 방법으로 중재판정이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96년 중재·조정법에서는 조정(conciliation)제도를 법에서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조정인은 객관성, 공정성, 및 정의의 원칙들을 수용함으로써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이 우호적인 타

36) Sumeet Kachwaha, “The Arbitration Law OF India: A Critical Analysis”,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 1, No 2, 2005, p.195.

37) O.P. Motiw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India”,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15 No.2, 1998, p.121.

38) *ibid.*, p.126.

39) *ibid.*, p.122.

40) *ibid.*, p.122.

협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② 법률서비스당국법(The Legal Services Authorities Act; 1987)제정

인도의회는 1987년 법률서비스당국법(The Legal Services Authorities Act; 1987)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94년에 개정되어 1995년부터 발효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공공설비서비스 분야에서 영구적 Lok Adalat를 설치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Lok Adalat는 자발적인 분쟁해결방법이 아니라 타협 등으로 해결된 분쟁에 대하여 법적 승인을 부여함으로써 법적인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 정착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무료로 합법적인 법률서비스 제공과 동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정의를 확보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Lok Adalat를 구성하는데 있다⁴¹⁾. 특히 2002년에는 공공설비서비스 분야에서의 영구적 Lok Adalat 설치로 항공기, 도로 또는 수로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서비스, 우편, 전신 또는 전화 서비스, 보험서비스, 병원이나 의무실 서비스, 전력, 상수도 서비스 등등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구적 Lok Adalat에 분쟁이 신청된 이후에는 어떤 당사자도 같은 분쟁을 가지고 다른 법원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직소금지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인도는 Lok Adalat 제도를 실제적인 분쟁해결제도로 정착화하기 위하여 간디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이를 개선하여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Lok Adalat는 1982년 간디의 고향인 Gujarat에 있는 Junagarh에서 개최된 이후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⁴²⁾.

토착적 개념에 기반을 둔 법률서비스당국법(1987)은 법원제도의 보완장치라는 의미에서 보면 소송자에게 거의 비용없이 그리고 최소한의 절차로 분쟁을 해결해준다. 그러나, 이 법은 법원 사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법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법원제도를 대체하거나 밀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⁴³⁾.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법률서비스당국(The National Legal Service Authority)은 이 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원칙을 정하기 위한 최상위 기관이다. Lok Adalat는 각 주에서 구성된 주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및 마을(taluka) 차원의 기관에서 행해진다. 즉, Lok Adalat는 주정부, 지방정부, 대법원 법률서비스 위원회, 고등법원 법률서비스위원회 또는 자치구 법률서비스 위원회 등 행정부서 및 법원의 법률서비스위원회에 의해 행해진다. 정부에 의해 설립된 Lok Adalat는 조정과 타협 등 비 논쟁적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41) The Legal Services Authorities Act(1987) 서문.

42) Anurag K. Agarwal, op. cit., p.5.

43) [http://kr.search.yahoo.com/search;_ylt=AjEo6jDfa7tN6x3.uHbKKALJ3_p6?p=Lok+Adalat&toggle=1&cop=mss&ei=UTF-8&fr=yfp-t-714\(2012.5.30.방문\)](http://kr.search.yahoo.com/search;_ylt=AjEo6jDfa7tN6x3.uHbKKALJ3_p6?p=Lok+Adalat&toggle=1&cop=mss&ei=UTF-8&fr=yfp-t-714(2012.5.30.방문))

(2)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센터(ICADR)에 등록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센터(ICADR)는 1996년 중재·조정법에서 규정한 조정(conciliation)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이 센터는 1860년에 제정된 사회등록법(The Societies Registration Act 1860)에 의거하여 법무부(the Ministry of Law and Justice) 산하단체로 등록되었다. 이 센터는 ADR의 여러 방법으로 국내 및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대중화하는데 그리고, ADR 과정들을 지지하기 위한 설비 및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New Delhi에 본부를 두고, Hyderabad와 Lucknow에 지역 사무소를 두었으며, 그 회원들은 변호사, 판사, 엔지니어, 기술자 및 의사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ADR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업가나 개인도 통상의 회원으로 자격을 주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ICADR에서는 협상, 중재, 조정(conciliation/mediation), med-arb, mini-trial, 신속절차중재 등을 포함한 여러 ADR 방법들을 이용하며, 이들 방법들의 각각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도기업들과 상거래활동을 하는 외국기업들은 인도의 ADR 방법들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있으며, 1996년 중재 및 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외국투자와 인도기업과의 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⁴⁴⁾

(3) 상거래 관행

인도에서 상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은 항상 협상테이블에서 협상을 통해 또는 양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제3자를 통해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러한 제3자는 일반적으로 동종 업종 또는 카스트에 속해있으며, 정직하고, 독립적이며 불편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사분쟁의 약 30%가 공식적인 조정(mediation or conciliation)방법이 아닌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⁴⁵⁾.

2) 인도 ADR제도의 주요 형태

(1) 중재

중재는 상대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분쟁을 일으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당사자들이 선택한 제3자에 의한 한 번의 절차로 당사자 간 우호적인 해결과 최종 해결을 원할 경우, 분쟁금액이 커 보다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하기를 원할 경우 그리고 금전적 청

44) O.P. Motiwal, op. cit., p.124.

45) ibid., p.118.

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쟁 등에 유용한 분쟁해결제도이다.

인도는 증가하고 있는 대외교역에 대비하여 1996년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중재·조정법을 제정하였다. 1996년 중재·조정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어떤 분쟁사건이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예외가 없다는 점이다. 당사자들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때 준거법과 중재장소를 인도 국내이든 국외이든 상관없이 선택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절차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중재 포럼의 절차를 채택할 수도 있다. 즉, 인도중재의 본질은 당사자들이 전통적인 사법제도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진 모든 판정은 어떤 합리적인 예외를 조건으로 하지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동시에 법원의 최종 결정처럼 강제할 수 있다. 중재절차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도에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엄격한 절차법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⁴⁶⁾.

인도에서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 유효한 서면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시작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인 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짝수는 되지 않으며, 중재인 수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1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⁴⁷⁾. 중재제도 이용과 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조항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법원의 개입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은 손해의 구제, 물건판매의 보호, 특별한 이행, 관리인의 선정 등과 같은 임시적 처분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⁴⁸⁾. 당사자들이 중재관할권을 기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를 통해서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 있는 경우는 희박하다.

(2) 조정

조정은 분쟁당사자간 자체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이 난관에 부딪쳐 자치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적절한 조정기법을 이용하면서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이다. 조정에서 제3자인 조정인은 분쟁에 개입하여 어느 당사자가 옳은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이러한 점은 중재나 소송과 구별된다. 즉, 조정인은 분쟁당사자에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⁴⁹⁾. 조정은 중재보다 덜 공식적인 ADR 형태이다. 일반적으

46) Vaish Associates, Advocates, op. cit., p.71.

47) 인도 중재·조정법 제10조.

48) 김광수, “한·인도 무역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10 봄호, p.48.

49)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12., p.57.

로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전형적인 분배적 협상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난관을 극복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적합한 분쟁해결방법이다. 또한 조정은 직접적인 협상에서 불편함을 갖거나 협상기술을 갖지 못한 당사자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된다. 조정은 전적으로 제3자에 의해 촉진되는 협력적이고 효과적인 협상과정이다.

인도에서는 존경받는 마을 어른이 공동체 분쟁을 해결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Panchayat 제도⁵⁰⁾라는 조정이 영국 식민지시대 이전부터 행하여져 왔다. 즉, Panchayat는 촌락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관습을 어긴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촌락의 집단적인 사업도 실행하는 전통적 의미로서의 사법적 기능을 갖는 집행기구이다. 이러한 전통으로 인하여 조정은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널리 행해져왔는데, Mahajans라고 하는 공정하고, 존경받는 사업가가 조정과 중재가 결합된 형태로 비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⁵¹⁾. 이전의 또 다른 분쟁해결 형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Panchas 또는 현명한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족의 분쟁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하여 Pancha를 만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방식에서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은 부족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한 공공 포럼으로 넘겨진다. Pancha는 주장, 항변 및 부족의 이해관계 등을 검토한 후 다시 분쟁해결을 시도하려고 한다.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Pancha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린다. 이는 고대 인도에서 조정이 실패한 경우 동일한 사람이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⁵²⁾. 이 결정은 부족법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조화와 변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족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행해지며, 모든 과정은 구두로 이루어진다⁵³⁾.

현 인도의 조정제도는 conciliation과 medi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conciliation과 mediation 모두 조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인도에서는 conciliation은 보다 공식적인 ADR 방법이고, mediation은 비공식적인 ADR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도의 중재·조정법 제62조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분쟁을 조정절차로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는

50) Panchayat는 기본적으로 촌락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카스트 내부 혹은 촌락 전체의 차원에서 자치적으로 관습법에 따라 구성되는 기구이다. 따라서 Panchayat의 구성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제기된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힘있는 카스트의 Panchayat가 그 촌락내부의 사법부 구실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Panchayat의 제재력의 범위는 대부분이 종교에 관한 범법행위를 다스리거나 세속적 범법 행위를 계도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다만 집단 내부의 갈등과 잡음을 최대한 완화하고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집단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잘 순응하고 변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판짜야뜨는 성문법이 확립된 19세기 이후부터 성문법에 의한 법원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촌락 질서 유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판짜야뜨는 법원에 비해 주로 가족, 성(性)관계, 가사분쟁, 토지분쟁, 직업, 오염행위, 소 등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루고 절도, 상해, 살인 등에 관해서는 정부법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http://indiadream.net/menu/62-6-13.htm> 10 July, 2012)

51) Anil Xavier, "Mediation: Its Origin and Growth in India", Journal of Public Law & Policy Vol. 27 No.2, 2005, p.275.

52) *ibid.*, p.276.

53) *ibid.*, p.275.

당사자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당해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인(conciliator)의 역할은 첫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당사자를 지원하고, 둘째, 이전의 당사자 간 사업관행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관련 거래 관행 및 분쟁을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 공정성 및 정의의 원칙하에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셋째, 조정인은 구두진술의 요청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⁵⁴). 한편, 조정인(mediator)의 역할은 촉진자(faciliator)로서의 역할로 한정된다. 조정(mediation)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조정은 평가적 또는 촉진적⁵⁵)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에서 conciliation과 mediation 간 차이를 정리하면, conciliator는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가능한 해결안의 조건들을 구체화하고 재 구체화할 수 있는 반면에 mediator는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없고, 단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해결을 촉진시키는데 있다⁵⁶). 인도에서 mediation은 변호사들과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잘못된 인식때문에 미국에서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고객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ADR 절차의 불확실성 위험에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mediation이 변호사 수입을 빼앗아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송당사자들도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mediation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즉, 착취에 대한 두려움, 사적 절차에 대한 불신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절차적 지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변호사가 지배하고, 공적이며, 공식적이고 평가적인 소송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⁵⁷). 하지만 인도에서도 mediation은 당사자의 선택사항이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mediation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집단주의 성향으로 체면을 중요시하는 인도문화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에서 공식적인 조정제도인 conciliation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⁵⁸).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한 당사자가 conciliation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지 않을 경우 시작된다.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conciliation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또는 초청장에 명시된

54) 인도의 중재·조정법 제67조.

55) 평가적 조정(evaluative mediation)은 조정인이 분쟁의 법적 실익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역할을 맡고, 촉진적 조정(facilitative mediation)은 조정인이 협상절차 자체를 보조하는데 초점을 두어, 당사자들이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56) M. Jagannadha Rao, "Concepts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and Their Differences", p.16.

(http://www.lawcommissionofindia.nic.in/adr_conf/mediation%20suced%20Rao%202.pdf; 20 March, 2012).

57) Anil Xavier, op. cit., p.281.

58) 인도의 중재·조정법 제61조-79조.

날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conciliation에 대한 초청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의 초대를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인 conciliator 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2인 이상의 conciliator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1인이 되며, 2인 이상의 conciliator가 있는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만약 한명의 conciliator만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의 선정여부의 동의를 할 수 있으며, 2명의 conciliator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들은 각각 한 명의 conciliator를 지명할 수도 있으며, 3명인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이 한명씩 지명하고, 이들이 의장 conciliator를 합의하여 선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conciliator는 1인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conciliator는 민사소송법이나 인도의 증거법에 구속받지 않으며,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을 도와주며, 객관성, 공정성 및 정의의 원칙들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conciliator는 지명되자마자 당사자들에게 분쟁의 일반적 성격과 쟁점에 관한 포인트를 기술한 서면진술서와 분쟁에 대한 입장,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러한 서류들의 사본을 상대방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conciliator는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이 만나거나 또는 구두나 서면으로 의사소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onciliator가 당사자들로부터 분쟁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수집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정보의 본질을 다른 당사자에게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들이 엄밀에 붙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conciliator는 해결책을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조정한다. 당사자들이 최종적인 해결안에 동의를 할 경우, 이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서명하게 되면, conciliator는 이를 인증하여 당사자들에게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이렇게 도출된 조정안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conciliator와 당사자들은 조정절차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1996년 중재·조정법은 분쟁의 신속한 절차를 독려하기 위하여 중재절차 중 조정 절차진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합의된 조건들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Lok Adalat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때부터 사적인 분쟁을 법에 호소해 해결하지 않고, 부족 또는 마을 공동체의 ‘풍습’을 존중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제재에 따라 자치적으로 규율하는

‘사회현실로서의 중재 또는 조정’을 우선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⁵⁹⁾. 인도에서도 이처럼 마을공동체에 의한 분쟁해결에 발달되어 왔는데 이를 ‘Lok Adalat’라고 한다. Lok Adalat는 “사람들의 법정(people’s court)”이라는 의미이다. 즉, “Lok”은 사람을 뜻하며, “Adalat”는 법정이라는 말이다. 기능적으로 Lok Adalat는 경험있는 조정인 앞에서 분쟁자들의 모임을 포함하여, 조정인이 자신들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분쟁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조정(mediation)과의 차이점으로는 조정(mediation)은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들의 자신들의 분쟁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비공식적인 절차인 반면에 Lok Adalat는 공식적인 조정을 말한다⁶⁰⁾. 공식적인 조정(conciliation)은 중재·조정법(1996)에 의하여 진행되는 반면에 Lok Adalat는 법률서비스당국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다.

Lok Adalat는 역사적으로 선사시대부터 전해온 매우 뿌리깊은 제도이다. Lok Adalat는 마을 어른들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온 제도로서, 인도 문화 및 인도 민족정신에 있어 정의의 개념과 매우 밀접히 관련이 있다. 조정, 협상, 사람들의 법정판결로 알려진 중재과정을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고대의 개념이 Lok Adalat의 철학 속에 개념화되었고, 제도화되었다⁶¹⁾. 특히, Lok Adalat는 1987년 법률서비스당국법(The Legal Services Authorities Act; 1987)의 제정으로 인도의 ADR제도로 정착되었다. 즉, 이 법은 은퇴한 재판관에게 Lok Adalat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인도의 헌법에는 국민들의 기본권리로 ‘헌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빈궁한 자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제공하고자 법률서비스당국을 설립하여 Lok Adalat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주고 있다. Lok Adalat에 의한 분쟁해결의 기반은 상호동의 즉 카운슬러 및 조정인의 도움으로 조정안을 자발적으로 수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ADR제도이며, 인도적 환경, 문화 및 사회적 관심에 가장 적합하다. 결국 Lok Adalat는 조정, 협상, 중재 및 참여 등의 일반적인 ADR방법들의 혼성체 또는 혼합물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Lok Adalat를 조정과 동일시하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협상 및 중재로 이를 간주하기도 한다. 참여, 합의, 공정성, 기대, 자발성, 이웃성, 투명성, 효율성 및 적대감없음 등 이 모든 것이 Lok Adalat라는 독특한 인도의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소송제도는 정의에 관하여 보다 큰 사회적 관심을 갖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분쟁을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덜 복잡한 해결방법에 관한

59)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30년사』, 1996, p.37.

60) V. Nagaraj, “Lok Adalats-A Conceptual Framework: The Indian Experience”, A. Sivananthiran & C.S. Venkata Rantnam,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Dispute in Indi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Subregional Office for South Asia, 2003, p.136.

61) Anurag K. Agarwal, op. cit., p.5.

호기심과 평화롭게 분쟁이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정, 협상, 중재 등 기존의 ADR 방법들을 혼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이 제도는 관련 분쟁 당사자, 대중 및 법률공무원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Lok Adalat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통상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사건으로서 초기의 자동차사고와 가족문제부터 법률위반 및 사소한 형사사건까지 다양해졌다⁶²⁾. 2002년 개정된 법률서비스당국법에서는 영구적 Lok Adalat를 설립하여 전화국, 전력회사, 지방자치제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부서와 시민간의 사소한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문제들도 Lok Adalat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⁶³⁾.

Lok Adalat의 절차는 법적 판결보다는 타협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형식성과 의례를 과감히 제거하고 단순화하였다. 이 절차는 Lok Adalat로 분쟁을 해결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Lok Adalat로 해결하도록 한 경우에 진행될 수 있다⁶⁴⁾. Lok Adalat의 결정은 분쟁 당사자를 구속하며, 이의 결정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Lok Adalat의 명령은 항소할 수 없다⁶⁵⁾. Lok Adalat는 법률서비스당국법에 의거하여 부탁된 사건을 결정하는 동안에 당사자들 사이에 타협에 도달하거나 해결하는데 가장 신속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정의, 형평, 및 공정게임의 원칙 및 다른 법적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⁶⁶⁾. Lok Adalat는 어떤 결정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법(1908)에 의거하여 민사법원에 부여된 권한을 똑같이 부여받아 증인의 소환, 서류발견, 선서진술서로 증거채증, 증거공공기록청구 등을 절차과정 중에 행할 수 있다⁶⁷⁾.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Lok Adalat에 의한 심판부의 의장은 전직 은퇴한 판사가 되며, 배석 심판자로는 사회운동가 또는 법률전문가가 되며⁶⁸⁾, 이들의 경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Lok Adalat는 재판관할권이 정규 법원에 있어 현재 계류중인 사건도 Lok Adalat에 의한 분쟁 해결도 가능하며, Lok Adalat로 사건이 이첩된 경우 법원은 이미 납부된 요금을 돌려 준다⁶⁹⁾. Lok Adalat에 의한 해결은 명령, 법령, 법원의 심판 또는 판결처럼 강제성을 갖고 있어 집행가능하며, 항소할 수 없다. 즉, Lok Adalat에 의한 해결책은 그 자체로는

62) 예로서, 자동차사고에서 신청인들은 주로 승객 또는 보행자이였으며, 피신청인들은 주로 회사 또는 정부투자기관 들 이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간의 분쟁들이 Lok Adalat에 의해 해결되었다.

63) Marc Galanter & Jayanth K. Krishnan, "Bread for the Poor: Access to Justice and the Rights of the Needy in India", *Hastings Law Journal* Vol.55.789, 2004 March, pp.799-800.

64) 인도의 민사소송법(2002) 제89조.

65) The Legal Services Authorities Act(2002 ed.) 제21조.

66) The Legal Services Authorities Act(2002 ed.) 제20조(4)항.

67) The Legal Services Authorities Act(2002 ed.), 22조.

68) The Legal Services Authorities Act(2002 ed.), 19조.

69) Nishita Medha,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India*, NALSAR University of Law, p.38.

강제성이 없으나, 그 해결책을 관련 법원에 이송하게 되면, 법원에서 화해판결로 내려지게 되어 강제력을 갖게 된다. 화해판결은 우호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이행하고자 한다. 법원에 의한 화해판결은 사기에 의한 해결인 경우를 제외하곤 취소될 수 없다.

이러한 Lok Adalat는 첫째, 양당사자의 동의, 둘째 당사자 중 일방이 사건부탁을 위한 신청, 셋째, 사건이 Lok Adalat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사건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넷째, 타협적 해결이 정의, 형평, 공정게임의 원칙 및 다른 법적 원칙에 의해 청구된 사건들을 다룰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은 법적 판단을 위해 관련 법원에 회부된다. 통상 인도에서는 공유물 분할소송, 손해배상 및 결혼사건 및, 금전적 클레임과 같은 사건은 Lok Adalat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Lok Adalat 앞에서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타협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Lok Adalat는 화해될 수 없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⁷⁰⁾. 또한 Lok Adalat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정규 법원에 비하여 현격하게 경감되었다. 거의 불필요하다시피 한 변호사 개입이나 항소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Lok Adalat에서 심판부 의장은 결정을 하는데 정규국가법원 보다 큰 재량권을 갖고 있다⁷¹⁾. Lok Adalat가 인도에서 분쟁해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은 권리를 침해당한 신청자가 이 제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법원에 수십 년동안 계류되어 있을 수 있는 사건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⁷²⁾.

(4) 협상

협상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사분쟁의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가장 적합한 ADR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물건을 살 때 흥정이 필수적이며, 상인에게 있어 거래의 목적은 정직이나 윤리, 도덕이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에 이윤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나쁜행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⁷³⁾,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도 금전적 이해관계가 협상의 쟁점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팀이 구성될 경우는 인도는 집단주의, 계급주의 사회로서, 의사결정방식은 상의하달(top-down)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의사결정권한이 최고책임자에 집중되어 있다⁷⁴⁾. 따라서 상사

70) http://en.wikipedia.org/wiki/Alternative_dispute_resolution.

71) Marc Galanter & Jayanth K. Krishnan, op. cit., p.828.

72) ibid., p.829.

73) 김지은, “인도상인들의 이유있는 거짓말”, 『Chindia Journal』, 포스코연구소, 2008.11., pp.24-25.

74) IBM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력거리지수(power distance index, PDI)¹⁾에서 인도는 한국의 60보다도 훨씬 높은 77

와 부하 직원 간 의사결정의 본질이나 이행의 방법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상사의 의견에 복종하며, 최고책임자와 논의없이 이루어진 합의를 서면화하여도 의미가 없다⁷⁵⁾.

Hofstede의 조사에 의하면, 인도의 불확실성회피지수(UAI; uncertainty avoidance index)는 40 점으로서 위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⁶⁾. 이러한 성향으로 인도인들은 계산된 위험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며, 그들의 협상방법은 융통적이다⁷⁷⁾. 인도인들은 조화를 중요시 여겨 직접적으로 'no'라는 말을 하지 않으며, 윤회사상 등으로 시간에 대한 민감성이 약하여 인도인과 협상시 단시간 내에 빨리 끝내려 하는 것은 금물이다. 마지막으로, 인도인들은 계약관계에서 영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과는 달리 서면합의를 존중한다. 인도인들과 분쟁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내용을 불이행할 것에 대비하여 합의서에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V. 결 론

ADR은 국제통상분쟁에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⁷⁸⁾. 첫째, 간이한 절차, 신속한 해결, 저렴한 비용, 전문성 및 국제성 등으로 인하여 소액 거래분쟁 뿐만 아니라 통상관련 분쟁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인도의 ADR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한 ADR제도는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인도는 중재·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중재법에는 조정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지 대한상사중재원의

을 보여주어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75) Rajesh Kumar, "Negotiating with the complex, imaginative Indian," Ivey Business Journal Online, London, Mar/Apr 2005, (in <http://proquest.umi.com/pqdweb?did=872087501>; 2nd July, 2012)

76) 한국과 일본은 UAI가 각각 85점과 92점으로 위험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이러한 성향은 Salacuse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Salacuse의 조사에 의하면, 12개국 응답자중 약 30%는 자신을 낮은 위험선호자라고 응답한 반면에, 약 70%는 위험선호자라고 응답하였다.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5, pp.52-53.에서 재인용)

77) Sanjyot P. Dumung, *Doing Business in Asia*, Lexington Books, 1995, p.384.

78) 신군재·김경배,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각 ADR 방법들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9., pp.203-204.

중재규칙에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도와 다르다.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의 독특한 제도인 Lok Adalt는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들 자신들의 분쟁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비공식적인 절차인 조정(mediation)과는 달리 공식적인 조정이라는 점에서 mediation과 차이가 있다. 또한, 공식적인 조정(conciliation)은 중재·조정법(1996)에 의하여 진행되는 반면에 Lok Adalat는 법률서비스당국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다.

넷째, Lok Adalat제도는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ADR제도로 아직까지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금전적 클레임이거나, 인도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현지인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의 Lok Adalat 제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비용이 없고,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정규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항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의한 해결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기업들은 ADR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즉, 한국기업들은 분쟁이 일단 발생하면 감정적 해결을 지양하고, 분쟁금액, 지속적 거래여부, 신규거래처 선정에 따른 거래비용,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활용여부, 양국의 중재제도 및 중재 또는 소송비용 등을 냉철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도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과 분쟁 상대방과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향후 분쟁해결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분쟁금액이 적거나,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협상이나 조정에 의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분쟁금액이 크지만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중재에 의한 방법을 거래관계를 단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이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분쟁해결방법의 기본은 협상에 의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계약서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는 협상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인과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인의

협상관행 및 과거의 협상경험 및 상대방이 제안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는 사전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제도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센터(ICADR)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이 공공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소송보다는 Lok Adalat에 임하며,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센터는 인도기업과 외국기업 간 ADR에 의한 분쟁해결에 많은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신용있는 거래처를 발굴하고, 거래시에는 가능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과 인도 모두 중재절차 중 조정절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한-인도 무역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10 봄호.
- 김지은, “인도상인들의 이유있는 거짓말”, 「Chindia Journal」, 포스코연구소, 2008.11.
-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12.
-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30년사」, 1996.
- 박승록, “무역 1조 클럽 가입의 기적, 그 이면의 해석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1.12.9.
- 박찬호, “인도의 사법제도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신군재·김경배,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각 ADR 방법들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9.
-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5.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인도편」, 해외지적재산권보호센터, 2008.10.
- KOTRA, “인도내 비즈니스분쟁, 소송해결 기대어렵다”, Mumbai무역관 자제보고서, 2009.08.31.
- 小島武司·伊藤眞, 「裁判外紛争處理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有斐閣, 1998.
- 電通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譯, 「國際ビジネス交渉術」, 勁草書房, 1991.
- Agarwal A. K., “Rol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Development of Society: ‘Lok Adalat’ in India”, Working Paper 2005-11-01,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Ahmedabad-

- 380015 India, November 2005.
- Burr M. T., "Litigation & Arbitration", INSIDECOUNSEL, November, 2007,
(www.insidecounsel.com; 10 June, 2012)
- Coulson R.,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 Dunung S. P., *Doing Business in Asia*, Lexington Books, 1995.
- Galanter M. & Jayanth K. Krishnan J. K., "Bread for the Poor: Access to Justice and the Rights of the Needy in India", Hastings Law Journal Vol.55.789, 2004 March.
- Goldberg S. B., Sander F. E.A and Rogers N. H., Dispute Resolution :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es, Little Brown & Co., 1992.
- Kachwaha & Parners, "The Indian Juridicial System: An Introduction",
[http://www.kaplegal.com/articles/indian-judicial-system.html], 20 Nov.2011.
- Kachwaha S., "The Arbitration Law OF India: A Critical Analysis",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ume 1, No. 2, 2005.
- Kumar R., "Negotiating with the complex, imaginative Indian," Ivey Business Journal Online, London, Mar./Apr. 2005(http://proquest.umi.com/pqdweb?did=872087501; 2nd July, 2012).
- Lieberman J. K. & Henry J. F.,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Spring 1986.
- Medha 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India, Nalsar University of Law,
(http://www.fdrindia.org/publications/AlternativeDisputeResolution_PR.pdf; 10. July, 2012).
- Motiwai O.P.,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India",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15 No.2, 1998.
- Nagaraj V., "Lok Adalats-A Conceptual Framework: The Indian Experience", A. Sivananthiran & C.S. Venkata Rantnam,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Dispute in Indi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Subregional Office for South Asia, 2003,
- Nishith Desai Associates, *Doing Business in India*, 2010 Edition,
(www.nishithdesai.com; 1st Feb, 2012)
- Rao M. J., "Concepts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and Their Differences",
(http://www.lawcommissionofindia.nic.in/adr_conf/mediation%20succed%20Rao%202.pdf,, 20 March, 2012).
- Reno J., Address to the Society of Professionals in Dispute Resolution in Dispute Resolution and

Lawyer, 2d ed., 1997.

Sumeet Kachqaha and Dharmendra Rautray, “Dependability, diversity and delay”, IFLR Litigation & Dispute Resolution (www.iflr.com; 23rd April 2012).

Twining W., Alternative to What; Theories of Litigation, Procedure and Dispute Settlement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Some Neglected Classics, 56 Mod. L. Rev. 380, 1993, p.383.

Vaish Associates, Advocates, REPORT ON Strategies for Doing Business in India, The Commercial Section of the Royal Norwegian Embassy, 2010.

Xavier A., “Mediation: Its Origin and Growth in India”, Journal of Public Law & Policy Vol. 27, 2005.

http://en.wikipedia.org/wiki/Alternative_dispute_resolution 10, June,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Ways of Disputes Resolution Against Indian Company through ADR system

Koon-Jae, Shin*

India is a gigantic market with a population of 1.2 billion and an economy that is growing at the second-fastest pace in the world. The volume of trade between India and Korea has been sharpl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dispute since 2000.

Although avoidance of disputes is always a priority, it is also important to prepar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which are efficient and economical. So, understanding of Indian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successful business operation with Indian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various ways of Indian ADR such as negotiation, mediation, conciliation, Lok Adalat and arbitration in order to help the Korean traders who enter into business with the Indian companies to settle their disputes efficiently.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overcome problems of dispute with Indian companies: First, the Korean companies should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Indian ADR Ways respectively. Second, the Korean companies should utilize the conciliation or the mediation in small claim but arbitration in large claim. Third, Write a contract and insert the KCAB's standard arbitration clause in their contract.

Key Words : Indian ADR, Negotiation, Arbitration, 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illa University.